

인도네시아 투자관련 법제 개관

- 회사법과 광업법을 중심으로 -

정보신청기관 : LG 상사

I. 서언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광산국가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국내 기업 및 외국인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의 견실한 경제성장과 양국 간 경제협력 활동 촉진에 따라 투자진출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투자법제 가운데, 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에는 상법과 주식회사법이 있다. 인도네시아 상법전은 회사를 3종류로 한정하여, 주주의 책임 범위에 따라 합명회사(Perseroan Firma: Fa), 합자회사(Commamditaire Vennootschap: CV),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PT)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 형태를 구분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PT)의 형태로만 회사를 설

립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1995년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이 제정되어 상법의 내용을 대체하였고, 2007년 새로운 주식회사법이 제정되어 발효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광업분야를 규율하는 법에는 2009년 1월 새로 제정된 인도네시아 광업법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9월, 광물과 석탄의 국내 우선사용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 광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10년 2월 발효하였다.

다음에서는 인도네시아 투자법제 가운데 회사법과 광업법을 중심으로 그 입법배경과 조항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의 주식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회사관련 법제 가운데 주식회사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인도네시아 회사법

1. 입법배경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규율하는 법규로서 최초로 제정된 것은 인도네시아 상법이다. 이 법은 1847년 네덜란드 식민 통치 당시 식민지 정부가 제정하였다. 그러나 산업발전에 따른 많은 외국투자 회사의 출현 및 복잡·다양해지는 거래 방법으로 인하여 새로운 회사법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을 분리시켜 1995년 주식회사법을 제정하였다. 1995년 3월 7일 공포하여 1996년 3월 7일에 발효된 주식회사법은 기존 대륙법계의 뼈대 위에 영미법계의 제도들을 가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법의 운용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M&A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임원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더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일반적인 경우 또는 특정한 경우를 통하여 사회 전반에 회자되었던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 주식회사법(1995)을 폐기하고 새로운 주식회사법(2007)을 제정·공포하였다.

2. 회사법의 구성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총 14장 16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총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회사의 설립, 정관과 정관의 변경, 등기 및 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자본금과 주식, 제4장에서는 연간사업 계획서 및 연간사업실적보고서에 관하여, 제5장에서는 회사의 사회·환경적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6장은 주주총회, 제7장은 이사회와 감사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분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9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조사를, 제10장에서는 법인으로서의 회사의 해산, 청산, 소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장에서는 비용, 제12장에서는 혼합규정, 제13장에서는 기타 규정, 제14장에서는 최종규정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2007)〉

제1장 총 칙(제1조-제6조)

제2장 회사의 설립, 정관, 정관의 변경, 등기 및 공고(제7조-제30조)

제3장 자본과 주식(제31조-제62조)

제4장 사업계획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이윤의 사용(제63조-제73조)

제5장 사회·환경적 책임(제74조)

맞춤형 법제정보

제6장 주주총회(제75조-제91조)
제7장 이사회와 감사회(제92조-제121조)
제8장 합병, 통합, 인수, 분리(제122조-제137조)
제9장 회사에 대한 조사(제138조-제141조)
제10장 법인으로서의 회사의 해산, 청산, 소멸(제142조-제152조)
제11장 비 용(제153조)
제12장 혼합규정(제154조-제156조)
제13장 기타규정(제157조-제158조)
제14장 최종규정(제159조-제161조)

3. 회사법의 주요내용

1) 회사의 설립

(1) 발기인 제도

회사의 설립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 허가, 설립의 3단계를 거친다. 회사가 설립하기 위하여 먼저 발기인을 구성해야 하는데, 발기인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¹⁾ 발기인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하다.²⁾

(2) 최저자본금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은 5천만 루

피아(Rupiah)이나 업종에 따라 별도 규제가 있다.³⁾ 법정 발행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최저자본금의 1/4로 정하고 있다.⁴⁾ 현금 출자 이외에도 다른 현물 내지 무형물로 출자할 수 있는데, 현물 내지 무형물로 출자할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출자하게 되며, 부동산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회사 설립 정관 일자 내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으로 출자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⁵⁾

(3) 상호선정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에서는 회사의 법인자격 신청 전에 상호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



1)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7조.

2) 외자투자회사는 먼저 외자투자 승인서를 획득한 후에 외자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수속 절차를 밟아 필요한 인·허가서를 받지만, 내자투자회사와 일반회사는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에 투자승인서가 나와서 인·허가서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32조.

4)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33조.

5)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34조.

한 확인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회사의 상호, 유사 상호, 국가 기관, 정부기관, 국제기관, 회사 설립 목적 내지 업종과 다른 상호, 숫자의 나열, 의미 없는 글자의 나열, 주식회사, 법인 혹은 민사계약상의 단체라는 뜻을 가진 상호의 사용은 금지된다.⁶⁾

(4) 정관작성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작성 및 공증절차가 필요하다. 설립정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크게 분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두 종류가 있으며, 주식회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른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⁷⁾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상호 및 회사의 법적 소재지, 설립 목적 및 업종, 회사 존속 기간, 공칭 자본금, 발행 자본금 및 불입 자본금액, 주식 수량,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에 따른 권리, 액면 가액, 이사 및 감사의 직명 및 인원, 주주총회 개최지 및 개최 절차,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교체 및 해임 절차, 임여금 사용

및 이익 배당 절차 등이 있다.⁸⁾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설립인이 자연인인 경우 설립인의 성명, 출생지, 출생연월일, 직업, 현주소 및 국적, 설립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상호, 법적 소재지, 현주소, 법무부 장관의 법인 승인서 번호 및 일자, 최초 피선된 이사 및 감사의 성명, 출생지, 출생연월일, 직업, 현주소 및 국적, 최초 주주의 성명, 주식 수량, 발행 및 불입된 주식 액면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⁹⁾

(5) 법인격 취득

회사의 설립정관이 확정되면 발기인들은 공동 명의로 법무부 장관에게 법인 자격 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한다. 법인 자격 인정 신청 기한은 설립정관의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형식 요건에 자본금 불입 확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 장관은 법인 자격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즉시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신청인에게 발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정 형식 요건을 미비한



6)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6조.

7) 합작회사인 경우에 합작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투자승인서, 정관 및 주식회사법 간에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 분쟁 가능성 줄이는 방법은 주주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주주 간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8)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5조.

9)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의 직무이나, 개정되는 내용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통보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법무부 장관의 정관 개정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은 상호 및 회사의 법적 소재지 변경, 회사 설립 목적 및 업종 변경(추가 혹은 삭제), 회사 존속 기간 변경, 공인 자본금 변경 등이다. 정관 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서 혹은 주주 동의서가 공정증서가 아닌 일반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증서로 변경하여야 하며, 공정증서로 변경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관 개정에 관하여 승인 신청 혹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일반문서 작성일자로부터 30일 후에는 공정증서로의 변경을 금하며, 공정증서로 변경된 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승인 신청이나 통보를 금한다(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21조).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서에 대하여는 즉시 거부를 통보하고, 형식 요건을 갖춘 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식 요건 충족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설립인은 30일 이내에 설립 정관, 소재지 증명서, 납세의무자 등록증 및 자본금 불입확인서 등 관련 증비서류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들이 실질 요건 심사에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은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자격 인증서를 발급한다. 법인 자격의 획득 시한은 최장 104일(60일+30일+14일)이다. 회사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법인 자격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사 설립 정관은 원인무효로 실효하며, 설립인은 회사를 청산하여야 한다. 규정된 시한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식 요건 충족 통보는 실효하며, 재신청할 수 있다.¹⁰⁾

구 주식회사법에서 규정한 시·군의 상무국에 회사 등록 의무는 당시 회사등록법에서 규정한 회사 등록을 회사들이 잘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주식회사법에서 측면 지원한 사항이며, 현재는 시·군 상무국에 회사 등록이 안정되어 2007년 주식회사법에서는 시·군 상무국에 등록 의무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회사등록법에 의한 시·군 상무국에 대한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현행 주식회사법에서는 새롭게 법



10)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30조.

11)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29조.

1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75조.

무부에 회사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회사 등록부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상호, 법적 소재지, 회사 설립 목적 및 업종 및 회사 존속 기간, 정확한 인도네시아 영토 내 현주소, 설립 정관의 번호, 일자 및 법무부 장관의 법인 인정서의 번호 및 일자, 필수 기본 사항에 관한 개정 정관의 번호, 일자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서 번호 및 일자, 필요로 기재 사항에 관한 개정 정관의 번호, 일자 및 법무부 장관의 통보 수령 확인서 번호 및 일자, 설립정관을 작성한 공증인의 성명 및 법적 소재지와 개정 정관을 작성한 공증인의 성명 및 법적 소재지, 주주,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현주소, 회사 해산 정관 번호 및 일자와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한 법원의 해산 결정문 번호 및 일자, 법인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공인회계사의 피감사 의무가 있는 회사의 해당년도 재무제표 등이 있다.¹¹⁾

2) 회사의 지배구조

(1)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로 구성된다. 주주총회는 이사회 및 감사회의 권한을 제외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주식회사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¹²⁾ 주주

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된다.¹³⁾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장에 기재된 안건에 한하며, ‘기타 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주주 전원의 참석과 동의에 의하여 통과될 수 있다.¹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요건은 주주의 과반수 참석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¹⁵⁾ 합병, 통합, 인수, 분리, 파산 선고 신청, 회사 존속기간 연장 내지 해산 안건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재소집할 수 있으며, 재소집된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참석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¹⁶⁾

원칙적으로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인정되지만,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은 주주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금지된다. 주주총회 진행 방법

은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Teleconference, Video Conference 혹은 다른 전자 매체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반드시 참석자 전원이 서로 육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¹⁷⁾

1명 이상의 주주들에 의해 합쳐진 주식 액면가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면 정기 내지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요청권이 있으며, 감사회도 주주총회 소집 요청권이 있다. 주주총회 소집 요청권 보유자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주총회 소집을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¹⁸⁾ 이사회 내지 감사회에서 법정 시한 내에 주주총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는 관할 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통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¹⁹⁾

(2) 이사회

이사회는 1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데,²⁰⁾ 피선임 전 5년 동안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책임이 있는 자, 금융범죄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죄



1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78조.

14)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76조.

15) 정관개정을 위하여 소집되는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 참석, 참석주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합병, 통합, 인수, 분리, 파산 선고 신청, 회사존속기간 연장 내지 해산을 위하여 소집되는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3/4 이상 참석, 참석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89조.

17)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77조.

18)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79조.

19)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80조.

20)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맞춤형 법제정보

로 형을 받았던 자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²¹⁾ 이사에 대한 선임, 교체,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²²⁾ 이사의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총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소수 주주가 해당 이사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관할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²³⁾

이사회는 법원 내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회의 회사 대표권은 주식회사법,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으나, 주주총회의 이사회의 회사대표권에 대한 결의가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위배되서는 안된다.²⁴⁾

한 회계연도에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전체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사전승인 요건은 정관에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3/4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한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소집되는 주주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재소집할 수 있으며, 재소집된 주주총회의 정족수 요건은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정족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참석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²⁵⁾

회사에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으며 파산 선고 발생 이유가 이사회의 회사 경영에 잘못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로 무한 책임을 진다.²⁶⁾

(3) 감사회

감사회는 회사 및 회사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고 이사회에게 조언을 주는 직무를 수행하며,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다.²⁷⁾ 감사의 자격조건은 앞에서 언급한 이사의 경우와 동일하다.²⁸⁾ 감사회는 회계감사위원회, 급여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관상 독립감사 및 대리

21)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93조.

2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94조.

2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97조.

24)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98조.

25)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02조.

26)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04조.

27)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회는 2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다(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108조).

28)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10조.

감사를 두도록 정할 수도 있다.²⁹⁾

이슬람법에 근거하여 샤리아³⁰⁾ 원칙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감사회 이외에 샤리아 감사회를 두어야 한다. 샤리아 감사회는 이사회가 이슬람의 샤리아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이사회에게 조언하고 이사회가 샤리아 원칙대로 회사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주주총회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 평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1명 이상의 샤리아 전문가를 샤리아 감사회의 감사로 선임한다.³¹⁾

감사의 선임, 교체 및 해임은 주주총회를 결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³²⁾ 감사의 급여 및 수당 등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결정된다.³³⁾ 감사는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감사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손실을 가져온 이사회의 경영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감

사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손실 발생 예방 혹은 손실 계속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회에게 필요한 조언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감사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해당 이사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관할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³⁴⁾

회사에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으며 파산 선고 발생 이유가 감사회원의 회사 경영에 대한 감독 직무 수행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감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로 무한 책임을 진다.³⁵⁾

정관에 대주주, 이사 내지 다른 감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1명 또는 그 이상의 독립 감사와 1명의 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둘 수 있다. 독립 감사 및 대리 감사에 대한 선임권 및 직무 범위 지정권은 주주총회에 있다.³⁶⁾ 감사회는 감사 1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회계 감사 위원회, 급여 위원회, 인사 추천 위원회 등 감사



29)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08조.

30) 샤리아는 이슬람교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이다. 샤리아는 신이 정해 준 계시법으로서 종교적 의무, 개인과 사회생활, 상업, 형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1)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09조.

3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11조.

3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13조.

34)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14조.

35)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15조.

36)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20조.

맞춤형 법제정보

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³⁷⁾

3) 주주의 책임 및 자금조달

주주책임은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가 법인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법인 자격의 획득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주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회사를 이용한 주주, 회사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주주, 직·간접적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회사자산을 이용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단독 주주가 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주식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아 계속 단독 주주의 상태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진다. 주식이 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매매가 자유로우며 회사 존재의 계속성이 더 높으며, 추가자금이 필요시에는 자본금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자금공급이 가능하다.

자본의 증가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³⁸⁾ 과반수 참석, 참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이 이루어진다.³⁹⁾ 회사자본의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 철회나 주식 액면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⁴⁰⁾

4)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회사의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⁴¹⁾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이란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회사의 의무를 의미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천연자연분야 및 이와 관련된 회사는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시행령에 따른다.

5) 회사에 대한 조사

회사, 이사, 감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주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소수 주주나 주식회사법, 정관 내지 회사와 약정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자 또는 검찰은 공의 보호 차원에서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내지 설명을 얻기 위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주주인 경



37)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21조.

38)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41조.

39)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42조.

40)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47조.

41)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74조.

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료 혹은 설명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에 한한다.⁴²⁾

6) 회사의 해산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상 회사는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정관에 규정된 회사 존속 연한 종료, 법원의 해산 명령서, 파산 재산 부족으로 파산경비 지불이 불가하여 상업법원의 파산 선고가 취소된 경우,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재산이 지불 불능 상태에 돌입한 경우,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되고 관계 법규에 의하여 해산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해산할 수 있다.⁴³⁾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 혹은 관재인에 의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며, 청산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을 금한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 및 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주주총회 또는 법원에서 승인해 줄 때까지 회사의 법인 신분은 존속된다.⁴⁴⁾

7) 소 결

이상의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우리나라 상법상 회사편과 비교하여 설립절차와 지배구조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 발기인의 숫자는 1명 이상이라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이는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발기인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외국의 입법추세에 따라 그 요건을 완화하여 1명 이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을 통해 유사상호금지 제도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상호도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대한민국 상업등기법 제30조). 또한 채권자 보호의 목적이 실제로 형해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회사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제도(구 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1항)를 2006년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발기인, 회사, 주주, 이사의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주식회사를 통하여 투자를 하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자투자 기업에게는 주식회사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38조.

4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42조.

44)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143조.

맞춤형 법제정보

III. 인도네시아 광업법

1. 입법배경

인도네시아 광업법(Law No. 11/1967)은 1967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구 광업법상 중앙정부에게 주어졌던 광업허가권(Contract Of Work: COW)⁴⁵⁾이 지방정부로 넘어갔고, 1999년 법률 41호로 제정된 삼립법에 의거해 보호법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채굴이 금지되는 등 광산개발의 장애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구 광업법, 지방자치제의 도입, 환경보호라는 3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광업규정들 간의 마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구 광업법을 대체할 새로운 광업법 초안이 2005년 5월 국회에 심의 상정된 후 2008년 12월 16일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2009년 1월 새로운 광산법(Law No. 4/2009 on Mineral and Cal Mining)이 발효되었다. 현행 광업법은 기존의 허가시스템(Mining Authorization(KP), COW)을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광업허가를 도입하였다. 또한 광업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들이 제정되었다. 2009년 11월 30일에 발효된 시행규칙 28호는 광물서비스는 인도네

시아 회사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31일에 발효된 시행규칙 34호는 광산회사에 대한 국내시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2010년 2월 1일에 정부 규칙 22호, 23호가 각각 발효되었는데, 여기서는 광산지역의 유형에 따른 설립절차 및 광산사업의 경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인도네시아 광업법 및 시행규칙은 구 법에 비해 광·탄산의 인·허가는 단순화되었으나 광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 및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평가된다.

2. 광업법의 구성

현행 인도네시아 광업법은 총 26장 17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광업, 광물, 기타 관련 용어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광물 및 석탄 광업의 원칙 및 운용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과 4장에서는 광물과 석탄 및 그 개발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시정부로 나누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광업활동을 위하여 국가가 지정한 광업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광업지역은 광업사업지역, 주민광업지역, 국가용예비지역



45) COW(Contract Of Work)라 함은, 중앙정부 주도의 광업허가시스템으로 1967년 법률 11호로 제정된 광업법에서 도입하여 석유탐사 등에 외국기업의 탐사 및 발굴권을 COW로 허용해 왔다. 이러한 권한은 1967년에 제정된 광업권 인가 및 허가를 규정한 정부규칙 32호로 확정되었다.

으로 나누어진다. 제6장에서 11장까지는 광업사업 및 광업사업의 허가에 관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제12장은 광업자료, 제13장은 권리와 의무, 제14장은 광업허가 및 특별광업허가의 일시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장은 허가의 종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6

장에서는 광업서비스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제17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의 수익, 제18장에서는 광산개발을 위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제19장 이하에서는 광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주민의 보호 및 연구, 계발, 교육, 훈련, 조사,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광업법(2009)〉

- 제1장 총 칙(제1조)
- 제2장 목적(제2조-제3조)
- 제3장 광물과 석탄에 대한 권한(제4조-제5조)
- 제4장 광물과 석탄 개발에 대한 권한(제6조-제8조)
- 제5장 광업지역(제9조-제33조)
- 제6장 광업사업(제34조-제35조)
- 제7장 광업사업의 허가(제36조-제63조)
- 제8장 광업사업의 허가조건(제64조-제65조)
- 제9장 주민광업허가(제66조-제73조)
- 제10장 특별광업허가(제74조-제84조)
- 제11장 특별광업사업의 허가조건(제85조-제86조)
- 제12장 광업자료(제87조-제89조)
- 제13장 권리와 의무(제90조-제112조)
- 제14장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사업 허가의 일시정지(제113조-제116조)
- 제15장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사업 허가의 종료(제117조-제123조)
- 제16장 광업서비스회사(제124조-제127조)
- 제17장 국가 및 지방의 수익(제128조-제113조)
- 제18장 광산개발을 위한 토지의 활용(제134조-제138조)
- 제19장 지도, 감독 및 주민의 보호(제139조-제145조)
- 제20장 연구, 계발, 교육, 훈련(제146조-제148조)
- 제21장 조사(제149조-제150조)
- 제22장 행정처분(제151-제157조)

맞춤형 법제정보

제23장 형사처벌(제158조-제165조)

제24장 기타규정(제166조-제168조)

제25장 경과규정(제169조-제172조)

제26장 최종규정(제173조-제175조)

3. 광업법의 주요내용

1) 목적과 권한

인도네시아 광업법에서는 석탄을 포함한 광물에 대한 기본원칙 및 광물자원의 개발목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원칙에는 4가지가 있는데, ① 유익·공정·조화의 원칙, ② 민족의 이익 우선의 원칙, ③ 참여·투명·책임의 원칙, ④ 지속적인 친환경 원칙이 그것이다. 광물자원의 개발목적에 대하여는, ① 광업회사⁴⁶⁾의 능력, 성과, 경쟁력 있는 광업활동의 운용보장을 통해 생산성의 효율을 제고할 것, ② 지속적이며 친환경적인 광물 및 석탄 광업의 유익을 보장할 것, ③ 국내 원자재 내지에너지원으로서 광물 및 석탄 확보를 보장할 것, ④ 국내,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원할 것, ⑤ 해당 지역의 주민, 지방, 국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것, ⑥ 광물 및 석탄 광업수행에 법적인 확실성을 제공할 것 등의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광물 및 석탄은 정부 소유의 국유재산이며, 그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다. 인도네시아 광업법은 개발 권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시정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국가의 필요시 생산과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각 생산물에 대한 지역별, 연간생산량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여 광업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광업지역

인도네시아 광업법상 광업지역이라 함은 광업활동을 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구역으로서 광업사업지역, 주민광업지역, 국가용예비지역⁴⁷⁾으로 구성된다. 광업사업지역의 지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조하여 지정하며 그 내용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주민광업지역은 지역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시장이 결정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용예비지역을 지정하고, 특정 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시스템 및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46) 광업회사는 인도네시아 법률에 의거하여 인도네시아 영토에 설립된 법인체로서, 광물 및 석탄의 일반조사, 탐사, 타당성 조사, 시설건설, 채굴, 가공, 정제, 수송, 판매 및 개발 이후의 활동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47) '국가자원보호지역'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국가용예비지역 내 자원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 국가용예비지역은 특별광업지역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특별광업지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다.

3) 광업사업에 대한 허가

구 광업법은 업무계약(COW)에 의한 광업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왔으나 현행 광업법에서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허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인도네시아 광업법에서 광업회사의 사업허가는 광업허가(IUP), 주민광업허가(IPR), 특별광업허가(IUPK)라는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광업허가는 일반채광을 목적으로 한 광업허가권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허용된다. 광업허가는 다시 광업탐사허가⁴⁸⁾와 광업시행허가⁴⁹⁾의 2단계로 구성된다. 광업허가는 한 종류의 광물 및 석탄에만 부여되며, 광업허가 보유자가 광업사업허가지역 내에서 다른 광물을 발견하여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광물의 개발을 위한 허가요청서를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속광물 개발을 위한 광업탐사허가는 최대 8년이고, 비금속 광물 개발을 위한 광업탐사허가는 최대 3년이다. 석탄 및 특별한 금속 종류에 한해서는 최대 7년으로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석

탄 및 비금속광물 중 특별한 광물을 및 금속광물의 광업생산시행허가는 최대 20년까지 발행되며, 10년씩 2회 연장될 수 있다. 비금속 광물의 광업생산시행허가는 최대 10년까지 발행되며, 5년씩 2회 연장될 수 있다. 암석에 대한 광업생산시행허가는 최대 5년까지 발행되며, 5년씩 2회 연장될 수 있다.

광업허가 중에서 제한된 투자액으로 제한된 지역인 주민광업지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허가를 주민광업허가(IPR)라고 하는데, 군수·시장은 동 지역 내의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민광업허가를 발행하며 개인이나 조합에게 발행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나 상업용 개발은 허용하지 않는다. 주민광업허가를 얻으려면, 신청자는 군수·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광업허가는 최대 5년 기간으로 발행되며, 연장될 수 있다. 주민광업허가를 받으면 최대 3개월 이내에 개발을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활동보고서를 관계 관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광업허가 중에서 특별광업지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허가를 특별광업허가(IUPK)라고 하며, 지역의 필요를 고려하여 장관이 발행한다. 이것은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것이지만, 발행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지방기업에게 우선권이 있다.



48) 일반조사, 탐사, 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9) 건설, 채굴, 가공, 정제, 소송, 판매를 포함한다.

맞춤형 법제정보

사기업은 특별광업허가지역의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광업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행정적인, 기술적인, 환경적인, 재정적인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광업허가 및 특별광업허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개발활동의 전체 혹은 일부가 방해받아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지역 내 광물 및 석탄개발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 정지된다. 일시 정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광업허가 보유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해 허가가 일시 정지될 경우에는 모든 의무가 면제되지만, 회사의 활동에 방해를 받거나 더 이상 개발을 지원할 수 없는 지역 환경상의 이유로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의무가 유효하다.

광업허가는 반납, 취소, 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종료될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광업법은 광업허가 보유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형사법을 위반하거나 파산한 경우에 있어서 허가 권한을 가진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에 의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가 유효 기간이 다 되었음에도 연장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하였음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된다.

2010년 2월 1일에 발효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이 발효 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COW, CCOW, KP, 지역광업 면허, 소규모 광산 면허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동

시행령 발효 3개월 이내에 동 정부 시행령 규정을 지킴으로써 IUP 또는 IPR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광업허가 기간 동안의 광업지역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을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2009년 신광업법 발효일 이전에 발급받은 KP는 동 정부 시행령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IUP로 전환하여 광업권을 받을 수 있다. 장기수출 계약을 갖고 있는 KP, COW, 광업관련 작업 계약자는 환경 및 자원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한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국내시장 우선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4) 광업 서비스회사

구 광업법에서는 광업권 보유회사들이 광물 생산과 관련한 탐사, 채굴, 가공 등의 모든 업무를 외부의 서비스회사에 계약을 통해 맡길 수 있었으나, 현행 인도네시아 광업법은 원칙적으로 광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광업허가 내지 특별 광업허가 보유회사가 광업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업법은 예외적인 광업서비스 회사를 인정하면서, 광업서비스 회사의 정의, 활동 내역, 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광업법상 광업허가 내지 특별광업허가 보유자가 광업서비스 회사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해당지역 또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광업서비스 회사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회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법인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하청업체 및 지역 내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⁵⁰⁾

광업허가 및 특별광업허가 보유자는 장관의 허가 없이 자회사 내지 방계회사를 광업서비스 회사로 사용할 수 없다. 장관의 허가도 해당 지역 내에 관련 광업서비스회사가 없거나 하청 능력 내지 의향이 있는 회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5) 국가 및 지방의 수익

광업허가 및 특별광업허가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국가 및 지방에 수익의 일부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는 세금 및 세외수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세금은 조세법에 의거한 세금과 관세 및 수입세로 구성되며, 세외수익은 고정분담금, 탐사분담금, 생산분담금, 정보데이터 보상금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금속광물 및 석탄의 경우, 해당 광업허가 및 특별광업허가 보유자는 생산이 개시된 후로부터 순수익의 4%를 중앙정부, 6%를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 처벌규정

인도네시아 광업법은 처벌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제22장 제151조-157조)과 형사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광업허가 보유자의 법률 위반에 대하여 장관, 주지사 및 시장·군수는

주어진 직권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행정처분은 서면경고, 탐사 및 생산활동 행위의 중지, 허가 취소로 이루어진다.

또한 허가 없이 광업사업을 하는 자와 허가 보유자임에도 본 법에 규정된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 및 설명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10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허가 없이 탐사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부터 광물 및 석탄을 인수, 이용, 가공, 정제, 수송, 판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IV. 결 어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2억 3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는 높은 내수 소비로 연결되는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더욱 크다. 인도네시아는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4.6%대의 성장을 이어갈 만큼 탄탄한 내수시장을 갖추었고, 특히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어 안정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 세계경제의 축으로 부상하고

»
50) 2009년 9월 30일 발효된 광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중매체를 통해 입찰정보를 띠워도 적절한 현지 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에만 외국 서비스회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계 광업서비스회사들의 경우, 광업권 보유업체로부터 작업을 수행하게 될 때, 작업의 일부분은 현지업체를 통해 아웃소싱하여야 한다.

맞춤형 법제정보

있는 중국, 인도와의 지리적인 근접성도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이 지역의 외국인 투자 법제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앞서 개관한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회사 및 회사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명문화한 규정, 특정한 경우 주주에게 무한책임을 인정한 규정, 이사 내지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한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슬람법에 근거한 샤리아 원칙으로 경영되는 회사에 대하여 샤리아 감사회를 두고 이슬람 지도자 평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샤리아 전문가로 감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슬람교의 영향이 법규정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광업법은 광산업을 기존의 계약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정부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광업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의 사용을 강제하였다. 이는 외국계 회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인도네시아 현지의 광업관련 기업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새로운 광업권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새롭게 광업권을 획득하면 입찰 및 이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광업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광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기존의 CCOW와 KP는 기존 계약기간이 유효하지만, KP의 경우에는 IUP로 허가를 바꾸어야만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을 인수 내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현지 투자대상 기업이 IUP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산림부 허가, 토지 주인의 동의 등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약 베이스로 광산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향후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광업권 보유업체에 대한 지분직접투자, 현지광업서비스업체와의 업무 제휴, 광업권 보유업체와의 계약 내용 갱신 등 사업구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으로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기업은 광업법 및 구체적 시행규칙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이 준 표

(해외입법조사위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선임연구원)